강도상해

[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7. 17. 2008고합166,204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 신지선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이형범 외 2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3을 징역 3년 8월에, 피고인 1(대법원판결의 피고인), 2를 각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로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86일을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84일을, 피고인 3에 대하여는 59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